## 재단법인 이음 정관

### 제1깡 총 칙

- 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"재단법인 이음" 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이라 한다. 영문으로는 "IUM"이라고 표기한다.
- 제2조(목적) 이 법인은 「민법」제32조 및 「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제3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, 법인은 더불어 나 누며 사는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법인의 주사무소는 부산광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·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- 제4조(사업)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- 1.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기초생계비, 의료비, 교육비 지원사업
  - 2. 저소득층 자녀 및 다문화 자녀를 위한 및 후원봉사활동 및 연구 지원사 업
  - 3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
- 제5조(무상이익의 원칙)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다.
- 제6조(수혜평등의 원칙)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되다.

#### 제2장 재산 및 회계

- 제7조(재산의 구분)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  -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예금 또는 동산으로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할 수 있으며, 그 목록과 평가액은 【별지목록1】과 같다.
  -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- 제8조(재산의 관리)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, 임대, 용도변경, 담보제공, 의무부담, 권리포기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 -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9조(재원) ①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, 후원금, 찬조금, 기부금,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.
-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공개한다.
- 제10조(회계연도)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11조(업무보고)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,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.
  -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.
- 제12조(세계잉여금)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- 제13조(임원의 보수)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제14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.
  - ②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  - 1. 이사장 1인
  - 2. 상임이사 1인
  - 3. 이사 5인이상 15인 이내(이사장, 상임이사 포함)
  - 4. 감사 1인이상 2인 이내
- 제15조(임원의 임기) ① 이사의 임기는 2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-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16조(임원의 선임)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  -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.
  - ③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.
  - ④ 상임이사의 사업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.
  - ⑤ 임원의 임기만료 1월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  - ⑥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제17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 - 1. 미성년자
  - 2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 - 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-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.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
- 제18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- ② 상임이사는 이사로서 직무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상근하며 집행한다.
  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

-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-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-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-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
- 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- 5.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- 제19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.
  - 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- 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- 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  - 4.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
  - 5.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제20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,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

### 제4장 이사회

- 제21조(이사회의 구성)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, 상임이사,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- 제22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이를 소집한다.
  -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

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-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-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23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
- 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법인의 모든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
- 4. 임원 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·해임에 관한 사항
- 5.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· 결산에 관한 사항
- 6.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
- 7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- 8.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 · 운영 · 폐지 등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의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제24조(이사회의결 제척사유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- 제25조(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)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26조(이사회의 회의록)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  -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
- 제27조 (서면결의)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### 제5장 사무부서

- 제28조(사무국) ① 법인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  - ② 사무처에는 사무국장과 기타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- ③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,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#### 제6짱 수익사업

- 제29조(수익사업)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  - ③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.

#### 제7장 보 칙

- 제30조(정관변경)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31조(해산)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 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제32조(잔여재산의 처리)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
- 제33조(청산종결의 신고)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- 제34조(운영규정)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

규정으로 정한다.

제35조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,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임원의 임기) 설립당시의 임원 및 그 임기는 【별지목록2】와 같다.

제4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# 설립자기명날인

발기인(이사장) 노영현 (인)

발기인(이 사) 이원철 (인)

발기인(이 사) 최가도 (인)

발기인(이 사) 이병국 (인)

발기인(이 사) 강구현 (인)

발기인(이 사) 문명순 (인)

발기인(감 사) 정비호 (인)

### 깨단법인 이음 절립까 대표 노 영 현 (인)

### 【별지목록 1】

## 설립당시의 기본째산목록

단위:천원

소재지	종별(용도별)	수 량	평가액	출연자	刊	고
	건 물					
	대 지					
	출연금		500,000	에스디상사(주)		
	【계】		500,000			

【출연재산의 액수 및 성질】

1. 현금: 부산은행 정기예금계좌의 기본재산 예탁금 5억원

### 【별지목록 2】

#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

성 명	직 위	임 기	비고
노영현	이사	2021.04 ~ 2023.06.30	
이원철	이사	2021.04 ~ 2023.06.30	
최가도	이사	2021.04 ~ 2023.06.30	
이병국	이사	2021.04 ~ 2023.06.30	
강구현	이사	2021.04 ~ 2023.06.30	
문명순	이사	2021.04 ~ 2023.06.30	
정비호	감사	2021.04 ~ 2023.06.30	

【임기의 시기 및 종기】 주무관청의 설립인가시부터 2023. 06. 30까지

### 【별지목록 3】

# 이사회 임원명부

성 명	주요약력	연락처	비고
노영현	동성무역 대표이사	010-3887-1725	
이원철	법무법인 국제 고문변호사	010-3844-6300	
최가도	원더그린(주) 대표이사	010-2562-2245	
이병국	세무회계 제이엘 대표 세무사	010-6668-0292	
강구현	관세법인 대천 관세사	010-8529-9090	
문명순	(전)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 지원센터장 (현)북부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원회위원장	010-3560-4081	
정비호	대주회계 법인 공인회계사	010-3851-9737	